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에서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위임한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을 확대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대체공휴일을 부처님오신날(음력4월8일), 기독탄신일(12월25일)까지 확대하여 시행(제3조)

나. 제3조 개정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함(부칙)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5. 참고사항

없 음

대통령령 제 호

##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제2조제2호 또는 제7호”를 “제2조제2호·제6호·제7호 또는 제10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2조제2호·제4호·제7호 또는 제9호”를 “제2조제2호·제4호·제6호·제7호·제9호 또는 제10호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 행	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
<p>제3조(대체공휴일) ① 제2조제2호            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          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      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           첫 번째 비공휴일(제2조 각 호            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.            이하 같다)을 대체공휴일로 한            다.</p> <p>1. <u>제2조제2호 또는 제7호</u>의 공            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           겹치는 경우</p> <p>2. (생    략)</p> <p>3. <u>제2조제2호 · 제4호 · 제7호</u>  <u>또는 제9호</u>의 공휴일이 토요            일 · 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          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          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           겹치는 경우</p> <p>② · ③ (생    략)</p>	<p>제3조(대체공휴일) ①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.</p> <p>1. <u>제2조제2호 · 제6호 · 제7호</u>  <u>또는 제10호</u>-----           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제2조제2호 · 제4호 · 제6호 ·</u>  <u>제7호 · 제9호 또는 제10호</u>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